

3. 복지실 법령·제도개선 건의사항 보고

복 지 실

법령·제도개선 건의사항 목록

복지실

총 7건 건의

목 록

연 번	건의제목	건의부서
1	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(지원상담서비스) 시설기준 면적제한 완화	복지정책과
2	재해구호물자 내구 연한 연장	복지정책과
3	장애 자녀의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연령 확대	장애인복지과
4	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추진	장애인복지과
5	장애인 편의시설 적합성 확인 범위 개선	장애인 자립지원과
6	장애인활동지원기관 지정의 유효기간 및 지정갱신 법적근거 마련	장애인 자립지원과
7	노인요양시설 확충을 위한 제도 및 법령개선	어르신복지과

법령 · 제도개선 건의사항

건의 제목 (건의부서, 건의일자)	건의내용	소관부처
<p>1.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(지원상담서비스) 시설 기준 면적제한 완화 (복지정책과, '25. 5. 2.)</p>	<p><input type="checkbox"/> 현황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사회서비스 유형 중 ‘지원상담 서비스’의 일원화된 전용면적 등록기준 ※ 「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[별표 1의2]에서 지원상담 서비스의 종류와 개별적인 상황에 대한 고려 없이 일관된 공간 등록 기준(33㎡)을 적용하고 있음 <p><input type="checkbox"/> 문제점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 면적으로 규제 완화 <p><input type="checkbox"/> 건의내용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현행 규칙에 ‘다만,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공공간의 면적을 달리 정할 수 있다’는 단서 조항을 이용하여 보건복지부 고시 혹은 지침 등을 통해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 마련 <p><input type="checkbox"/> 관련 규정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	<p>(보건복지부)</p>

건의 제목 (건의부서, 건의일자)	건의내용	소관부처
<p>2. 재해구호물자 내구연한 연장 (복지정책과, '25. 5. 2.)</p>	<p>□ 현황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시·도지사는 재해구호물자 의무 확보, 보관상의 이유 등으로 처분 시에는 구호에 필요한 물자를 다시 비축하여 항상 유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「재해구호계획 수립 지침」 근거, ① 시·도별재해구호물자(응급·취사구호세트) 의무 비축 물량, ② 내구연한(유통기간) 등 보관 기준 명시 → 유통 기간 도과 시, 시·도별 비축량 준수를 위하여 추가 의무 구매 <p>□ 문제점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'16년, 응급구호세트 품목에서 당시 내구연한(5년)에 비해 상대적으로 짧은 생리대(3년) 고려하여 내구연한을 3년으로 단축했으나, ○ 구호 세트 내 유통기한이 긴 공산품임도 내구연한 3년 도과 시, 의무적으로 폐기 및 추가 구매를 하여 불필요한 예산집행 발생 <p>□ 건의내용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재해구호물자 내구 연한을 제품 성격에 맞게 현실화할 수 있도록 「재해구호계획 수립 지침」 내 구호 세트별 내구연한 연장* * (예시) 응급구호세트(3년→5년), 취사구호 세트(7년→10년), 주기별 점검 강화 <p>□ 관련 규정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재해구호법 시행규칙 	<p>(행정안전부)</p>

건의 제목 (건의부서, 건의일자)	건의내용	소관부처
<p>3. 장애 자녀의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연령 확대 (장애인복지과, '25. 3. 28.)</p>	<p><input type="checkbox"/> 현황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발달장애인은 평생 돌봄이 필요한 경우가 많으며, 가족에게 과도한 부담이 전가되어 부모가 자녀 돌봄을 위해 직장을 그만두는 사례가 많음. <p><input type="checkbox"/> 문제점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육아휴직: 발달장애인은 연령과 관계없이 돌봄이 필요한데, 현행법상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 2년 이하 자녀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음. ○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: 현행법상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 6년 이하 자녀에 한해 사용 가능하나, 발달장애인은 연령과 관계없이 돌봄이 필요하여 사용 연령 확대 필요 <p><input type="checkbox"/> 건의내용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(육아휴직) 및 제19조의2(육아기 근로시간 단축) 개정하여 장애를 가진 자녀의 육아휴직 및 근로시간 단축 사용 연령을 확대하거나 연령 제한을 폐지 <p><input type="checkbox"/> 관련 규정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, 제19조의2 	<p>(고용노동부)</p>

건의 제목 (건의부서, 건의일자)	건의내용	소관부처
<p>4.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추진 (장애인복지과, '25. 3. 31.)</p>	<p><input type="checkbox"/> 현황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장애인예산 및 서비스 증가에도 불구하고, 각종 센터 등 다양한 사회복지서비스 수요가 지속적으로 발생 - 개인 욕구에 따라 스스로 선택하는 수요자 중심 복지전달체계로의 개편 필요 <p><input type="checkbox"/> 문제점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현행 「사회복지사업법」은 사회복지서비스의 현물 제공(제5조의2제1항) 및 이용권(바우처) 활용방식(제5조의2제2항)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어, 현금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'장애인 개인예산제'의 안정적 시행에 어려움이 예상됨 <p><input type="checkbox"/> 건의내용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「사회복지사업법」 개정으로 사회복지서비스에 상응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일반규정을 마련하고, 「장애인복지법」, 「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」, 「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등 장애인복지 사업에 관한 개별법률을 정비하여 장애인 개인예산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<p><input type="checkbox"/> 관련 규정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사회복지사업법 제5조의2 	<p>(보건복지부)</p>

건의 제목 (건의부서, 건의일자)	건의내용	소관부처
<p>5. 장애인 편의시설 적합성 확인 범위 개선 (장애인자립지원과, '25. 3. 31.)</p>	<p><input type="checkbox"/> 현황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「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」 제9조 및 제9조2에 따라 건축물의 주요 부분을 변경(증축 등)할 때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적정 설치를 확인(적합성 확인)하여야 함 * 「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」 제9조의3 제1항에 따라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적정 설치 확인(적합성 확인) 업무는 (사)한국지체장애인협회에서 대행 중 ○ 법령에 대한 구체적 지침인 보건복지부 「장애인등편의법 일부조항 처리지침」은 적합성 확인 대상 범위를 ‘건축행위가 발생한’ 부분 외에 ‘건축행위가 발생하지 않은 건축물 모두’로 과다하게 규제하고 있음 <p><input type="checkbox"/> 문제점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공공주택 등 건축물의 일부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변경부분뿐 아니라 변경하지 않는 부분까지 현재 기준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기준을 적용하여 적합성 확인을 해야하는 것은 과도한 ‘그림자규제’*에 해당 * 그림자규제 : 법·시행령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지침 등으로 실제 시민생활을 규제 <p><input type="checkbox"/> 건의내용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보건복지부 「장애인등 편의법 일부조항 처리지침」 개정 <p><input type="checkbox"/> 관련 규정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」 제9조 및 제9조2 	<p>(보건복지부)</p>

건의 제목 (건의부서, 건의일자)	건의내용	소관부처
<p>6.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지정의 유효기간 및 지정갱신 법적근거 마련 (장애인자립지원과, '25. 5. 8.)</p>	<p><input type="checkbox"/> 현황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현행 법령 상 장애인활동지원기관 ‘지정결정 유효기간’ 설정이 의무화 되어 있지 않음 - 특별자치시·특별자치도·시·군·구는 활동지원기관 공모 시에 지정 결정의 유효기간을 정하여 공모할 수 있음 ※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운영안내(보건복지부 지침) ○ 기관의 활동지원사 법정임금 미지급 및 회계 부정이 발생해도 행정처분 규정이 별도 없음 <p><input type="checkbox"/> 문제점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현행 법령상 장애인활동지원기관 ‘지정 결정 유효기간’ 설정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고, 행정처분이 어려워 자진 폐업하지 않는 한 기한 없이 운영 가능 <p>〈지정취소〉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활동지원기관 또는 활동지원사가 서비스 제공을 거부 - 이용 장애인을 폭행하거나 성폭행·성희롱 등의 행위가 있을 경우 <p>⇒ 업무정지 처분 2회 이상 처분받아야 지정 취소되는 등 행정처분의 실효성 미비</p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건의내용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「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」 개정 -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지정의 유효기간(6년) 및 지정갱신 조항 신설 <p>※ 제20조(활동지원기관의 지정 등) 개정, 제21조(활동지원기관 지정의 유효기간) 신설, 제22조(활동지원기관 지정의 갱신) 신설</p> <p>(참고)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의3(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유효기간) : 유효기간 6년</p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관련 규정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 	<p>(보건복지부)</p>

건의 제목 (건의부서, 건의일자)	건의내용	소관부처
<p>7. 노인요양시설 확충을 위한 제도 및 법령개선 (어르신복지과, '25. 3. 31.)</p>	<p><input type="checkbox"/> 현황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노인요양시설 전반적으로 공급이 부족하며, 특히 공공요양시설에 대한 선호도가 높으나 공급은 부족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노인요양시설 충족률 65.1% * 희망하는 운영 주체 공공(87.9%)>민간(12.1%) ○ 자치구 간 노인요양시설 공급 편차가 커 일부 지역은 시설 부족 심각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자치구별 충족률 중구 22.5%, 금천구 96.9%로 최대 74% 차이 <p><input type="checkbox"/> 문제점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건립부지 부족 및 재정 투입 과다 문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市 유희부지 부족 및 재정 문제로 건립 가능한 대규모 토지 확보 어려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토지 3,000㎡ 확보시 약 369억원 소요 - 국비를 지원받고 있으나, 낮은 공사단가로 시 재정 부담 과다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서울시 공사비 단가(3,668천원/㎡) 대비 낮은 국비 지원단가('22년 1,980천원/㎡) ○ 돌봄시설을 기피시설로 인식, 지역주민 반대로 일부 시설 건립 난항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지역주민 민원으로 사업진행 지연(송파 가락동, 여의도 시범아파트 등) <p><input type="checkbox"/> 건의내용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 개정을 통해 거주자 우선 입소 근거 마련 ○ 「노인복지법 시행규칙」 개정을 통해 토지와 건물의 장기임대를 통해서도 요양시설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<p><input type="checkbox"/> 관련 규정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노인장기요양법 및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	<p>(보건복지부)</p>